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2280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

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

변 론 종 결 2022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1. 10. 1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0. 20. 접수 제2089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

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① 피고는 ‘C’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, ② 피고는 B과 2021. 10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2021. 10. 20.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, ③ 피고는 B에게 2021. 10. 20. 43,720,000원, 2021. 10. 21. 30,000,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, ④ 피고는 B으로부터 신용점수평가표 등을 제출받았고, B과 2021. 10. 21.자 대부거래계약을 작성하였는데, 위 계약서상 대부 원금은 8,000만 원, 이자는 연 10%로 정한 사실, 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영업상 금전 대부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, 피고와 B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지혜선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 동대문구 동[도로명주소] 서울 동대문구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원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 : 84.85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: 1. 서울 동대문구 대 5602.3㎡

대지권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 비율 : 5602.3분의 23.5239

끝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의 피보전채권

가.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

원고는 소의 주식회사 **D** (이하 소의 회사라고 합니다)의 부탁으로 소의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소의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(갑제1,2호증).

(1) 보증서번호 : **E**

보증일 : 2019. 3. 11.

보증원금 : 1,096,500,000원

보증기한 : 2020. 3. 11. (2022. 3. 11.로 변경, 갑제1호증의 3,4)

대출과목 : 중소기업자금대출

대출은행 : 기업은행 **F** 지정

(2) 보증서번호 : **G**

보증일 : 2019. 10. 18.

보증원금 : 238,000,000원

보증기한 : 2020. 10. 16. (2022. 10. 14.로 변경, 갑제2호증의 3,4)

대출과목 : 중소기업자금대출

대출은행 : 기업은행 **F** 지정

나. 구상관계의 약정

원고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신용보증을 하면서, 소외 회사가 원고의 신용 보증서에 기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,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(갑제1,2호증의 각 2), 지연손해금은 2019. 4. 1.부터 연 8%입니다(갑제4호증).

또한 원고에 대하여, 소외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(갑제1,2호증의 각 2).

다. 은행의 대출실행

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일 무렵 각 신용보증서에 기재 기업은행으로부터 1,290,000,000원 및 280,000,000원을 각 대출받았습니다.

라. 사전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

기업은행은 2022. 1. 21.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 발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문을 하였습니다(갑제3호증).

원고와 소외 회사, B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,

‘신용보증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 부실사유 발생 통지를 받은 때’에 원고는 소의 회사와 B에 대하여 보증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합니다.

마. 소 결

그렇다면, 소의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채무 1,334,500,000원(원고가 보증한 보증금액 1,096,500,000원과 238,000,000원의 합계)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2. 원고 구상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성

(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(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53704 판결 등).

(2) 원고는 소의 회사,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전구상채권을 가지고 있고,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(아래에서 상술함) 이후에 성립한 것이기는 하지만,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각 성립해 있었고,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로 2022. 1. 21.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위 사전구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

습니다.

3. B의 사해행위와 피고의 악의 추정

(1) B은 원고에게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21. 10. 19.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잘 아는 사이인 피고와 사이에 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(갑제5호증).

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B은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 1,334,500,000 원¹⁾ 등 채무가 있는 반면, 위 부동산 외에 특별히 실익있는 적극재산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, 사해행위 당시 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.

(2) B의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부실 적전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사고 직전에 잘 아는 사이인 피고에게만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담보를 제공하여 준 것으로서, 그 행위는 사해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.

4. 결 어

1)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요건인 채무자의 무과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설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방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행위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(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98451 판결).

따라서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B 과 피고 사이에 2021. 10. 1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 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0. 20. 결수 제2089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.

